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예규 적용 근거를 마련하여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인용된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5조, 제7조, 별표)
 ○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명칭반영(안 제7조)
 ○ 내부 사무분장, 직위 반영, 오자 수정 및 체계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상위법상 권한 없는 규정 삭제 및 통합방위예규 적용근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8조, 제20조,「민방위기본법」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7. 7.~ 2016. 7. 27.)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및 제 17조의”를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제2조제2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전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

제3조제2항제4호 중 “새마을업무담당과장”을 “보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협의회 위원은 별표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제3항제3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민신고 조직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제4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심리전담당간사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나.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제5조제2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부서장, 보도업무담당부서장

제7조제1항제1호 중 “방위작전”을 “통합방위작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위종합상황실”을 “통합방위종합상황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방위 취약지”를 “취약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위”를 “통합방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방위법시행령」제25조제3항”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실의・의결”을 “심의・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담당”을 “부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및 재정지원반의 분야별로 구성하되”를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지원반의 분야별로 구성하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다만, 읍・면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및 의료구호지원반”을 “다만, 읍・면은 총괄, 보급・급식, 인력・재정동원, 통신・전산 및 의료・구호지원반”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합방위 작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 군부대에서 작성한 「성주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집”을 “소집”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선정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

1. 지역책임 군 부대장
2. 성주군의회의장
3. 성주경찰서장
4.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5. 국가 정보원 성주담당관
6. 성주우체국장
7. 성주소방서장
8. 자유총연맹성주군지부장
9.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10. KT성주지사장
11. 한국전력공사성주지사장
12. 성주군재향군인회회장
13. 의료업체 대표
14. 건설, 수송업체 대표
15. 봉사 및 구호단체의 장
16.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17. 성주군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18.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성주군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9조 ---------- ---------- ---------- ---------- ---------- ----------.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 ----------.
1. 통합방위대비책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2. ----------
<신 설>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신 설>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신 설>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 설>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
3.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삭 제>
5. 취약지역 대비책	<삭 제>
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	<삭 제>
7.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및 대책	<삭 제>
8. 지역예비군 중대시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삭 제>
9. 통합방위작전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생 략)	4.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5.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1. 작전담당 간사	1. 작전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가. 경찰책임지역 :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삭 제>
나. 특정경비지역 (군책임지역과 을종사태지역) : 지역군부대 작전장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총무 및 민방위 담당간사 : 총무업무담당과장	3.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
4. 심리전담당간사 : 새마을업무담당과장	4. ---------- : 보도업무 담당부서장

<신 설>	③협의회 위원은 별표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①·② (생 략)	제4조(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3. ----------
가.·나.·다.·라.·마. (생 략)	가.·나.·다.·라.·마.(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주민신고 조직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바. (생 략)	사. (현행 바목과 같음)
<신 설>	4. 심리전담당간사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민방위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민방위협의회	2.----------제7조----------
제6조(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② ---------- ---------- ----안전관리담당-------.
1. 총무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과장, 새마을업무담당과장	1.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부서장, 보도업무담당부서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 반을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 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1. 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통합방위작전 ----------
2. 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4. 취약지----------
5. 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5. 통합방위 ----------
6. 방위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6.「통합방위법 시행령」제20조제3항----------
7. 기타 협의회에서 실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7. ---------- 심의·의결----------
②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이내외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통합방위 지원본부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상황 실장은 총무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 부읍·면장----------.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및 재정지원반의 분야별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면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및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지원반의 분야별로 구성하되----------. 다만, 읍·면은 총괄, 보급·급식, 인력·재정동원, 통신·전산 및 의료·구호지원반----------.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 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통합방위 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 군부대에서 작성한 「성주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삭 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삭 제>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삭 제>

제9조(회의 및 의결) ①협의회의 회의는 소장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의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0조(회의의 종류) ----------.
1. 정기회는 분기 1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1. ---------- 소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선정기준표	【별표】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선정기준표(제3조 제3항 관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상북도 성주교육청 교육장	4.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한국통신성주전화국장	10. KT성주지사장
11. 한국전력공사성주지점장	11. 한국전력공사성주지사장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신 설>	17. 성주군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16. (생 략)	18. (현행 제16호와 같음)